

건설소식

하도급물량 50%, 지역업체 할당

국토부, 산하 지방청에 협조 요청

|앞으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건설공사 하도급물량의 일정 부분이 지역 전문건설사에 배정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의 핵심은 산하기관별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물량 중 최대 50%를 지역전문건설사에 할당토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발주 기관의 몫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상호협력평가 조항의 손질도 뒤따를 전망이다.

현행 평가방식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물량을 많이 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인 반면 지역 전문건설사에 일정 물량을 할당하면 평가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종별로 실력 있는 전문건설사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대형건설사는 지역의 역량 있는 하도급사 선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역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물량 배분을 의무조항으로 오인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발주기관이 시공품질과 원가절감 효과를 고려해 도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되, 정부취지는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토착업체들을 조금 더 배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원도급업체 적발

경부고속철 공사선급금 3억 8000만원 지급 강요...철도시설공사 시정 지시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의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려던 원도급자가 적발됐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H사는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선급금 3억8,000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영세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원도급업체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선급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H사에는 만기가 각각 4월 30일(1억원), 5월 31일(1억원), 7월 31일(1억8,000여만원)인 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더욱이 원도급업체는 H사 통장에 어음할인으로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 어음결제를 기정사실화했다고 관련단체는 밝혔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공공공사에 경우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토록 되어 있어 원도급업체의 행위는 불법이며 관련단체는 이 같은 사실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알려 진상조사를 요구,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원도급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도급대금 한번만 밀려도 '발주자 직불제' 적용

국토부, 하도급 위반 585건 적발 시정명령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한 번만 늦게 줘도 발주자 직불제가 적용된다.

또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은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보완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29개 산하기관 및 지방청 1,73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23개 업체가 585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고 1차로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을 이행치 않은 때는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례로는 불법어음 지급이 296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기한 초과(239건, 40.9%), 대금 미지급(50건, 8.5%)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원도급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지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불제 적용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법 35조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때 직불제는 임의 사항이고 2회 이상 지체해야 의무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런 건설법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1회만 지체해도 곧바로 직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및 소속 기관은 물론 정부부처, 지자체에도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적발업체부터 곧바로 하도급직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다 위반사례인 불법어음 지급행위도 강력히 대처한다.

현행법상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원도급사는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처분과 함께 곧바로 발주자 직불제를 적용한다.

다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오는 기성금과 달리 매달 지급해야하는 하도급대금 특성을 감안해 기성금 지급일이 돌아오기 전에 불가피하게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는 행위는 허용하되, 할인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한다.

국토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배경은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현장의 현금결제율이 나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1,515개 건설현장(하도급계약 미체결 233곳 제외) 중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현장이 75.9%에 달했고 어음·현금 병행지급(17.4%)이나 어음지급(6.7%)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본부, 지방청, 설비·전문협회별로 운영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정에서 무기명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도 곧바로 조사, 처분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업체명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사 특성상 기명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자재납품업체,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체납 및 저가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전면조사 외

에도 매달 기관별로 취합해 상시조사를 지속한다”며 “하반기 건설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추가로 단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제화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작업과 무관한 사고 산업재해를 산정서 제외

권익위 “교통사고·개인지병까지 포함 입찰에 제약…산재 은폐증가” 개선 권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를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건설업체들이 골치를 앓는 산업재해 산정 항목을 현실적으로 개선, 노동부 등 해당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산업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재해율을 PQ점수에 적용, 각종 관급공사 입찰 때 반영토록 하고 있다.

재해율에 따른 가점은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인 경우 2점, 1배 초과는 0점으로 7단계로 구분된다. 산재 은폐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2점씩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건설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무과실 재해인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천재지변 △야유회 △체육행사까지도 산재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신고를 기피·은폐하거나, 경미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공상처리하는 일이 관행화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특히 재해율에 따른 가점부여 등이 PQ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산재에 포함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산재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해 사업주의 산재 은폐요인을 제거, 해당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건설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출퇴근이나 체육행사, 개인지병 등에 의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지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하도급 피해 해결해 드려요

공정위, '하도급 119' 본격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수령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조사반(일명 하도급 119)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일 가동한 비상조사반이 32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32억2,9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성과가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포함)을 지급치 않는 관행은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도급업체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으로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